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9
----------	------

제출년월일 : 2005.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의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1)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을 하향 조정 (안 별표)
- 2)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개선 :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외에 상품권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제한 :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18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04.11.30)
-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2004.12.10)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신고포상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현물 등으로 지
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하되”로 한
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월50만원”을 “월3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u>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적발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u>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cm²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생략)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u> ----- ----- ----- -----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u>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사함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자 대표의 실명 계좌로 입금한다.</u> ② (생략)	제1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u>신고포상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계좌에 입금하되, -----</u>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u>월50만원을 초과한 경우</u> 4. ~ 8. (생략) ② (생략)	제18조(주민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월30만원</u>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u> 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 ----- -- <u>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u> -----.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단위 : 만원)

과 부 과 대 상	대 요						포상금액	
	현 행			개 정 안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 반(이 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 반(이 후)		
1.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2.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별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50	100	200	20	1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30	50	100	10	5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10	30	50	7	3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50	100	200	2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30	50	100	1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10	30	50	7	3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100	200	300	30	15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현 행			개 정 안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라. 영 제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합 인점소형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100	200	300	3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 제외)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 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30	50	100	2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 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0	50	10	3
(3) 매 장 면 적 이 33 제 곱 미 터 이 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10	30	7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50	100	200	2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0	50	100	1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10	30	50	7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5	10	30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 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 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 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50	100	200	2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30	50	100	10	5
(3) 매 장 면 적 이 33 제 곱 미 터 이 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10	30	50	7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5	10	30		

(단위 : 만원)

과 태 료							-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현 행			개 정 안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50	100	200	20	10
3. ~ 12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과 태 료			포상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단위 : 만원)

과 대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합인점소평셀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 제외)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 장 면 적 이 33 제 곱 미 터 이 상 165 제 곱 미 터 미 만 인 도 소 매 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 장 면 적 이 33 제 곱 미 터 이 상 165 제 곱 미 터 미 만 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단위 : 만원)

과태료				포상금액
부과대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50	100	
나. 폐가물을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1론 이상 또는 1주에 1론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주)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80	90	100	
4.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5.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포장공간비율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할 때	150	200	300	
(2) 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인 때	200	250	300	
(3) 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250	300	300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하)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 더 포장한 때	100	150	300
(2)기준보다 2회 더 포장한 때	150	200	300
(3)기준보다 3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00	250	3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라. 원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마.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의 포장용기재 사용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에 의한 포장용기 재사용 협조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바.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의 감량화 지침에 따른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아.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6.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200	300	300	
7.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8.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9.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활구조개선타당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10.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1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12.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 제3항)	50	70	100	